뉴욕주
음주 및 약물남용 서비스 사무국

취소 날짜_____ 직원 서명_____

환자 성 ,	환자 이름	중간 이니셜
케이스 번호		
의료 기관	부서	

전염성 질환 관련 정보 공개 동의서

주의: HIV 관련 정보에는 적합하지 않음

지시사항: **환자에게 동의서 복사본을 주십시오!** 환자 케이스 기록용으로 복사본 1장을 준비하십시오.

본인은 뉴욕주 위생기준 (10 NYCRR 2.10)에 따라 전염성 질환 진단 직후 24시간 내 뉴욕주 보건부(NYSDOH)에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는 점을 권고 받았습니다. 본인에게 전염성 질환 발병이 확인된 경우, 의료 기관에서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 뉴욕주 보건부에 이 사실을 보고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통보 받았습니다.

따라서 의료 기관이 전염성 질환 보고 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본인이 전염성 질환 진단을 받게 되면 상기 명시된 의료 기관이 본인의 전염성 질병에 관한 정보를 NYSDOH에 보고하는데 동의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이름, 주소, 진단 내용, 본인으로 인해서 질병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신원, 질병 발생 원인(확인된 경우), 처방된 치료 및 현재 치료와 관련된 정보(구체적으로 명시)로 제한됩니다.

본인은 이 동의서와 관련해서 특정한 조치가 이미 취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본 동의서에 의거하여 NYSDOH에 제공된 정보는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는 재공개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상기 명시된 의료 기관의 퇴원날짜로부터 6개월 후에 이 동의서의 효력은 상실된다는 점도 이해합니다. 모든 공개의 법적 근거는 음주 및 약물남용 기록에 관한 기밀보호를 규정한 미국연방규정(Code of Federal Regulations) 타이틀 42와 건강보험 양도 및 책임에 관한 법안("HIPAA") 45 C.F.R Pts 160 & 164이며, 본인의 추가적인 서면 동의 없이 상기에 명시된 의료 기관 이외의 제 3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됨을 이해합니다.

_____ _____
환자 서명 날짜

뉴욕주 보건부 전염병 보고 준수 사항

아메바성 감염	B형 간염 - 임산부	풍진 – 선천성 풍진 포함
광견병 예방이 필요한	생후 60일 이하	포함
동물에게 물린 상처	신생아 포진 감염	살모넬라증
탄저병	병원 내 감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아르보바이러스 간염	(NYCRR Section 2.2 10에 정의)	쉬가독수 감염
바베시아증	인프루엔자(실험실 보고만)	세균성 이질
보툴리눔 식중독	레지오넬라증	**천연두**
브루셀라병	선회병	황색포도상구균
캄필로박터증	라임병	반코마이신에 대한 민감도 또는 내성 감소를 보이는 균주에 의한 발병)
연성 하감	서혜 림프 육아종	내성을 보임)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 감염	말라리아	**포도상구균장독소 B 중독**
콜렐라	**홍역**	연쇄상구균 감염 (아래 주의 4번 참조)
크립토스포리디오시스증	**멜리오이도시스**	(침입성 질병)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침입성
원포자증	수막염	그룹 A 베타 용혈성 연쇄상구균
디프테리아	무균성 또는 바이러스성	그룹 B 연쇄상구균
엘리히증	**헤모필루스**	폐렴연쇄상구균
병원성 대장균 O157:H7	**뇌척수막염균**	매독, 단계 명식기타(종류 명시)
뇌염	기타(종류 구체적 명시)	파상풍
식품매개 질병	**수막알균혈증**	독소 충격 증후군
편모충증	**원두(원숭이 수두와 비슷한 질병)**	전염성 해면양 뇌증(TSE)
마비저	유행성 이하선염	선모충병
임균 감염증	백일해	**결핵 현 질병 (장소 명시)**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침입성 질병)	**페스트**	**툴라레미아**
한타바이러스 질병	**급성 회백수염**	**장티푸스**
용혈성 요독증후군	앵무새병	비브리오병
A형 간염	**Q열**	**백시니아 질병한타바이러스 질병**
음식 조리사 A형 간염	**광견병**	**바이러스 출혈열**
B형, C형 간염 (급성 또는 만성 명시)	로키산 홍반열	여시니아증

특별 참고 사항

1. 상기에 **굵은 글씨체로** 명시된 질병의 경우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기밀 케이스 보고서 양식 (DOH-389) 제출 후 전화로 지역 보건국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뉴욕주의 경우 395V 보고서 양식을 이용하십시오.
2. 상기에 명시된 질병 이외에 특이 질병(전염성 감염인자 또는 미생물독소로 발생되는 신규 질병 또는 신드롬으로 정의)도 보고해야 합니다.
3. 발병: 특정 질병(예: 연쇄상구균 인후염, 머릿니, 농가진, 옴, 폐렴)이 일부 개인에게 발생하는 경우는 보고가 필요 없지만, 전염성 질환이 집단적으로 또는 대규모로 발생하는 경우는 보고해야 합니다.
4. 연쇄상구균과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감염은 혈액, CSF, 관절, 흉수에서 배양 양성이 발견된 경우만 보고합니다. 피부, 상처, 타액, 목, 가래에서 배양 양성이 발견된 경우는 보고하지 않습니다.